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이하 “계속운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270호, 2025.1.21. 공포, 2026.1.1. 시행)됨에 따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의 계속운전에 관한 주기적 안전성평가 조문에 해당 법률 근거조항을 명시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계속운전에 관한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위임 근거 명시(시행령 안 제 36조제4·5항,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2항)

- 1) 계속운전을 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음.
- 2)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이러한 주기적 안전성평가 및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의 계속운전에 관한 주기적 안전성평가 조문에 해당 법률 근거조항(「원자력안전법」 제23조제1항 단서)을 명시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4항 중 “설계수명기간 만료일”을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계수명기간 만료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후”를 “후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로 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을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4호”를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제4호”로 한다.

제146조의2제1항제3호 중 “법 제23조제1항 및 이 영 제36조제4항에 따라 계속운전”을 “계속운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3항 단서 중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

라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을 “「원자력안전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으로, “그”를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고 그”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6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 ① ~ ③ (생략)	제36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이하 “계속운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u>설계수명기간 만료일</u> (그 후 10년마다 10년이 되는 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기준일이 되기 10년 전부터 5년 전까지의 기간 내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 ----- ----- ----- ----- <u>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계수명기간 만료일</u> ----- ----- ----- ----- ----- -----.
⑤ 계속운전을 하려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4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제출한 후 제3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대한 평가결과의 유효성(계속운전을 하기 위한 평가결과가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하는 평가보고서를 제4항에 따른 평가기준일이 되기 3년 전부터 1년 6개월	⑤ ----- ----- ----- <u>후 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 따라</u> ----- ----- ----- ----- ----- ----- ----- -----

전까지의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⑥ (생략)

제37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① (생략)

② 계속운전을 하려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3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제36조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출한 평가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의 유효성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작성한다.

1. 2. (생략)

③ (생략)

제38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① (생략)

② 계속운전을 하려는 원자로 시설에 대해 제3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⑥ (현행과 같음)

제37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 -----
-----.

-----.

1.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8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 법 제23조제1
항 단서에 따라 제1항제4호-----
-----.

1. · 2. (생략) 제146조의2(적극적인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및 방법) ① 법 제103조의2제1항 본문에서 “원자력 이용시설에 대한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관련 심사결과와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검사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 2. (생략) 3. <u>법 제23조제1항 및 이 영 제36조제4항에 따라 계속운전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 및 이 영 제37조제2항 각 호의 평가에 관한 사항</u> 4. ~ 8. (생략) ② ~ ④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제146조의2(적극적인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및 방법) ①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u>계속운전</u>----- ----- ----- ----- ----- 4. ~ 8.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심사과	
연 락 처	(02) 397 - 7260